제 115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권선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5년 01월 0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소	신고사항
최**	최** 2009-09-24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	재등록
최**	최** 2009-09-24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	재등록
최**	최** 2011-04-28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	재등록
최**	신*** 1973-12-25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	재등록
최**	최** 1975-11-03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	재등록
최**	최** 1979-05-20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81번길	재등록
김**	김** 1982-08-15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문세영 문의전화 : 031-228-6630)

2024년 12월 17일

권선1동장